

문서번호	BSKS-1-1-17
제정일자	2012.02.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1/4

2012.02.01.제정 2016.03.01.개정 2016.11.01.개정 2017.03.01.개정 2019.02.14.개정 2020.09.25.개정 2021.02.24.개정 2022.04.15.개정 2022.07.29.개정 2023.02.28.개정 소판부서 :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 학칙 제46조(졸업), 제47조(후기졸업), 제48조(학위수여). 제49조(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의 종류) 졸업은 전기졸업과 후기졸업으로 구분한다.

제3조(졸업의 시기) 졸업의 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일정은 매년 학사일정표에 의한다.

전기졸업 : 2월 중
후기졸업 : 7월 중

**제4조(자격)**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를 졸업예정자로 한다.

제5조(졸업자격) 졸업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4회 이상의 정규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단, 편입생은 별도로 한다.)
- 2. 총 취득학점이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2년제 학과는 80학점 이상, 3년제 학과는 120학점 이상, 2017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입학생은 2년제 학과는 75학점 이상, 3년제 학과는 112학점 이상,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입학생은 2년제 학과는 72학점 이상, 3년제 학과는 108학점 이상,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2년제 학과는 70학점 이상, 3년제 학과는 108학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6.11.01., 2017.03.01., 2019.02.14., 2023.02.28.>
- 4.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이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48학점 이상, 2004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입학생은 56학점 이상, 2010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입학생은 50학점이상, 2016학년도부터 2022학년도 입학생은 2년제 학과는 46학점, 3년제 학과는 69학점이상,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2년제 학과는 40학점, 3년제 학과는 60학점이상되어야 한다. 단, 외국인 유학생과 편입생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03.01.,2016.11.01., 2019.02.14., 2023.02.28.>

제6조(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



문서번호	BSKS-1-1-17
제정일자	2012.02.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2/4

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1학년 수료 : 36학점 이상<개정 2019.02.14.>

2. 2학년 수료 : 72학점 이상<개정 2019.02.14.>

3. 3학년 수료 : 108학점 이상<신설 2016.11.01.><개정2019.02.14.>

- 제7조(졸업유보) ① 졸업대상자 중 총 취득 학점이 제5조(졸업자격) 제2호의 기준 이상을 취득하였으나 전공필수과목 중 미취득과목이 있는 자와 전공학점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유보한다.<개정2019.02.14.>
  - ② 졸업유보는 졸업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학기 단위로 실시한다. 단, 당해 학기에 수강신 청을 하지 않으면서 휴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된다.
  - ③ 졸업이 유보된 자의 기 취득한 성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 ④ 졸업이 유보된 자가 1학기 중에 졸업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후기 졸업대상자가 된다.
- 제8조(졸업유예) ① 졸업대상자 중 총 취득 학점이 제5조(졸업자격) 제2호와 제4호의 기준 이상을 취득하였으나 계속수학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기타사정으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2021.02.24.,개정2022.07.29>
  - ② 졸업유예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최대 연속한 2개 학기까지 가능하다. 단, 당해 학기에 등록하지 않으면 다음 졸업대상자로 분류하여 졸업처리 한다.
  - ③ 졸업을 유예한 자의 기 취득한 성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 ④ 졸업을 유예한 자 중 계속수학에 의해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7항을 따른다. 단, 기타 사정으로 인해 졸업을 유예한 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7.29.>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14.02.01.)에 의하여『교무처』를 『교학처』로 『산학처』를 『산학·취업처』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15.12.24.)에 의하여『산학·취업처』를 『산학 처』로 명칭 변경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BSKS-1-1-17
제정일자	2012.02.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3/4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0.09.25.)에 의하여 『교학처』를 『교무처』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2.04.15.)에 의하여『학생산학취업처』를『산학처』로,『기획처』를『기획실』로,『입학홍보처』를『입시홍보실』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BSKS-1-1-17
제정일자	2012.02.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4/4

<별지 제1호 졸업유예신청서> <신설 2022.07.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BSKS-1-1-17
제정일자	2012.02.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5/4

# <u>졸업유예신청서</u>

학과				학변	<u>H</u>			
성명					일일	•		
이수학점	총이수학점		전공이수학점					
1. 졸업유	·예 신청사유							
2. 졸업유	2. 졸업유예 신청학기 1개 학기 (			)	2	개 학기	( )	)
3. 졸업유	·예기간		. ~		•			
위 사유	구로 인하여 죝	<b>음업을 유예하고</b> 년	<b>자 신청</b> 천	일	허가하	·여 주시기		다.
				신청자			(인)	
		지도교수			(인)			
				학과장			(인)	
부산경상대학교총장 귀하								